



임 종 우
조사팀 차장

조정, 다시 없을 소중한 기회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가지 법률적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만족할 수 없다면 언론인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고소·고발을 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이야기이고, 실제로 조정신청 이외의 법적 절차를 강구하는 것은 분명 가시밭길을 걷는 일일 겁니다. 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 법원소송으로 이어졌으나 결국 흐지부지 마무리된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법률전문가인 중재위원께서 소송의 어려움을 당사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조사관인 필자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보면, 소송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률지식이 많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우리 위원회의 조정절차가 피해회복을 위한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피해자가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례적으로 2시간 30분에 이르는 장시간의 심리 끝에 소정의 위로금 지급 등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이는 중재부의 당사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와 분쟁해결을 위한 인내심 발휘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B 방송사에 이웃으로부터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자신의 사연을 제보하였습니다. B 방송사는 제보자 A씨의 일상과 이웃주민의 반응 등을 담아 10분 정도 분량의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이를 방송하였는데, 방송된 내용은 제보와는 달리 A씨를 괴롭히는 이웃은 실재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A씨의 오해나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 이후 A씨는 자신의 제보내용과 달리 해당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해 피해를 보았다며 우리 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B 방송사는 ‘신청인의 제보와 이웃주민의 발언 등을 바탕으로 방송을 제작하였고 신청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을 변조하는 등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처리해 방송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중재부는 방송내용이 ‘공공재’인 방송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A씨의 사생활 노출로 신청인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방송사에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오랫동안 여러 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경험이 있으니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신청인 A씨에게 중재부는 ‘소송절차의 어려움’과 ‘조속한 분쟁해결의 장점’을 인내심을 갖고 설득하였습니다.

조정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손해배상금 산정 과정에서 작은 금액 차이에 의해 양측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아 피신청인이 퇴장하였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조정성립 직전에 갑자기 신청인이 보도문에 이의를 제기해 원점에서 다시 문안을 작성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랜 언론인 경험을 바탕으로 풍부한 경륜을 갖춘 정확철 부위원장을 비롯한 중재위원들께서 최고의 인내심을 발휘하며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의 필요성’을 차근차근 당사자에게 설명한 결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이란 양측의 의사가 조율되지 않으면 원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제적·법률적 약자에게는 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실질적으로 ‘유일한 구제수단’이거나 적어도 다시 없을 소중한 기회임을 당사자가 인식하도록 중재부의 세심한 배려와 조사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